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8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2.8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생활체육과장 강영대】

### 가. 제안이유

지역 내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운동 종목을 저비용으로 배우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·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1)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2)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
3)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#### ○ 본 조례 제정안은

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, 안 제3조에서 지원 내용을,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관련 내용을, 제6조에서는 회계책임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 감독과 보조금 환수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.

- 위와 같이 살펴 보건데,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마포구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에 따른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보조금 지급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 제6조(지도·감독)에 보조금을 받는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에 대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: 수정가결 (※ 수정안 첨부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